

2019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0년 2월 20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확 인 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교 (1997)**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다. 관련 규정	6
2. 이사회	7
가. 역할(권한과 책임)	7
나. 구성(이사) ·····	14
다. 활동내역	21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3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2
가. 역할(권한과 책임)	42
나. 구성	42
다. 선임기준	43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5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8
4 사업이사 화동 · 보수 등	81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81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16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11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17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120
	바. 사외이사 평가	120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23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25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29
5.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31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131
	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31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34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37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39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141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141
6.	. 감사위원회	143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43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4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49
	라. 감사보조조직 등	156

7. 위험관리위원회	157
가. 역할(권한과 책무)	157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6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62
8. 운영위원회	170
가. 역할(권한과 책무)	170
나. 구성(운영위원회위원)	17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71
9. 사회적책임위원회	174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76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76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77
가. 총괄	
가. 궁릴 나. 구성 ······	177
	178
다. 권한과 책임	180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84

2. 보수체계	188
가. 주요사항	188
나. 보수 세부사항	· 19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94
[첨부]	
첨부 1. 정관	201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227
첨부 3. 이사회규정	244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52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255
첨부 6. 위험관리규정	263
첨부 7. 보수위원회 규정	280
첨부 8. 내부통제기준	283
첨부 9. 윤리강령	326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원칙]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꾸준한 지 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 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있습니다.

[정책]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 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정 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역할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적법성 · 공정성 · 사업성 등을 확 보하도록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9 년말 기준이사회 57%가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제 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9 년말 기준 금융분야 4명, 경영 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지속적 교육 실시 및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축을 통해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 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 경영에이바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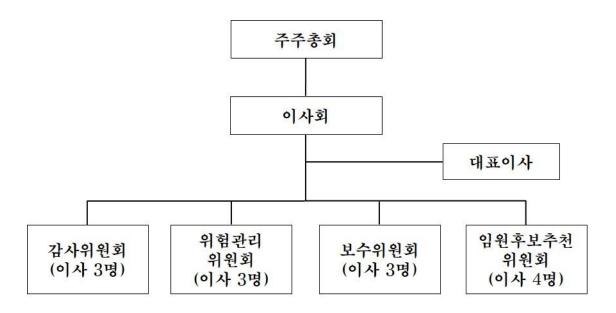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i)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성 · 역할 · 활동내역, ii) 이사의 독립성 · 전문성, iii) 감사제도, iv) 임원의 보수, v) 이해관

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라 회사경영의 투명성·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주요 경영정보 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충실 하게 공시함으로써 감독당국이나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2019 년 12 월 31 일기준 총 7 명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 인으로서 상

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써 금융분야 4명, 경영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2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자격요 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하여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금융투자협회, 회사 홈페이지 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항목으로는 이사의 역할,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등이며,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 참석률(75% 이상 참석 여부) 또한 중요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임기한에 대한 제한(총 6 년, 계 열회사 포함 9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감사위원회의 경우 2/3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중 1 인으로 하고 있습 니다.

3) 지배구조 현황 (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와이사/ 구성원)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이사회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해 심의 및 의결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	4/7	황건호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 규범, 이사회규정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 원) 후보 추천 등	3/4	정용선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의 적정성 구축,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 · 개선하 기 위해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 · 집행 등	3/3	김병일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 규범, 감사위원화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관한 법률』 준수 여부 상시점점,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등	3/3	황건호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보수위원화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 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 의 조성,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 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 한과 책임 등	2/3	조성일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위험관리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별표이사회 결의사항 6).

2020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해 경영진 및 사외이사 의견을 수렴하여, '20년 1월 개최된 제 52 기 제 1 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확정하였습니다.

○ 2020 년 경영전략

- 연결세전이익 9,000 억원
- 중점 추진방향

핵심전략	추진 과제
Global	· 본사와 해외법인 협업을 통한 Global Biz 플랫폼 구축 · 해외법인 세전이익 확대
Investment	· IB 신규 Biz 추진 : 공모리츠 등 대체투자 확대 · PI 수익 증대
Digitalization	· 외부 플랫폼 연계 비즈니스 추진 · 전사 Digital Transformation 확대 및 생산성 증대
Pension	· 연금, VIP,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 글로벌 우량자산 기반 고객자산 리벨런싱

나) 정관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심의 · 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이사회결의사항 1. 나. 1)).

이에 따라 '19년 3월 개최된 제 51기 제 7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변경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사유
 - * 외부 법률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이사 구성에 대한 문구 조정
- 주요 변경내용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 년 9 월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주권 및 사채권의 전자등록 사항을 반영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되어 이를 반영
- *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19 년 3 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연간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편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7) 이에 따라 '20 년 예산은 '20 년 1 월 개최된 제 52 기 제 1 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8 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19 년 1 월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19 년 2월 제 51 기 제 4 차 이사회에 '18 년 결산안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최종 제출된 '18 년 결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FY2018 별도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66,683,867	영업수익	11,277,317
부채총계	58,448,619	영업이익	541,228
자본금	4,1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56,382
자본총계	8,235,248	당기순이익	434,085

○ FY2018 연결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118,085,499	영업수익	13,323,940
부채총계	109,733,133	영업이익	512,329
자본금	4,1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85,009
자본총계	8,352,366	당기순이익	462,010

○ 이익배당

- 보통주 : 1주당 220원(시가배당율 : 3.3%)

- 우선주(미래에셋대우우): 1주당 242원(시가배당율: 5.3%)

- 우선주(미래에셋대우2우B) : 1주당 220원(시가배당율 : 5.9%)

'19년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결산안(배당 포함)이 승인되었으며, 현금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이사회결의사항 1. 나. 4)).

공시 대상 기간 중 해당 안건은 부의된 바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ㆍ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5. 나.).

정관 제 38 조의 2 제 1 항, 이사회규정 제 12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위험관리규정을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는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최종 의결합니다.

바) 경영승계업무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

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 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영승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항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미래에셋대우는 상법 제 397 조의 2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51 기제 9차, 제 10차, 제 19차 이사회에 부의된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안)"은 거래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재적이사전원 찬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 · 유가증권 · 자산 · 상품 또는 용역 거래(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 51 기 제 1 차, 제 4 차, 제 5 차, 제 7 차, 제 9 차, 제 10 차,

제 12 차, 제 13 차, 제 14 차, 제 16 차, 제 17 차, 제 19 차, 제 20 차 이사회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바있습니다.

아)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이사)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이사회규정 § 4),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정관§ 31),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더불어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의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 보고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3 항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19 년말 현재 사외이사는 금융분야 1 명, 경영분야 1 명, 재무·회계분 야 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분야 전문가인 사내이사 3 인을 포함하여 총 7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장으로는 사외이사인 황건호 이사가 이사 전원의 동의로 '19 년 3 월 제 51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투 명한 지배구조 정책을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의장 황건호

황건호 이사는 2016 년 3 월 25 일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어 미래에 셋대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건호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07~현재>, 서강대학교 초빙교수<'16~'1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2~'1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09>,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사장)<'99~'03>, 대우증권㈜ 부사장<'96~'99> 등

② 사내이사 최현만

최현만 이사는 2016 년 11 월 4 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8 기제 16 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최현만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6~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15~현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07~현재>,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2~'16>,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99~'12>,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97~'99> 등

③ 사내이사 조웅기

조웅기 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9기 제 3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웅기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17~현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10~'16>, 하나은행<'98~'99>, 보람은행<'91~'98> 등

④ 사내이사 김상태

김상태 이사는 2018 년 3 월 27 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사장 직위로 IB 부문 총괄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IB 부문 총괄<'18~현재>, IB 사업부문 대표<'14~'18>, 유진투자 증권기업금융총괄 상무<'10~'13>, 메리츠종합금융 IB 사업본부장<'07~'10>, 대우증권<'89~'07> 등

⑤ 사외이사 김병일

김병일 이사는 2016 년 2 월 5 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 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 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07~현재>,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15~'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4~'15>, 금융위원회 금융발 전심의위원회 위원<'08~'09>, ㈜대현 상임감사<'99~'07>, 재정경제원 서기관 <'95~'99> 등

⑥ 사외이사 정용선

정용선 이사는 2019 년 5 월 8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용선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19~현재>, 한국리츠협회 고문(비상근)<'19~현재>, 제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17~'19>,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13~'19>, 삼 상자산운용㈜ 사외이사<'10~'13>, 법무법인 화우 고문<'08~'13>,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06~'08> 등.

⑦ 사외이사 조성일

조성일 이사는 2019 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사외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성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17~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99~현재>, 멀 티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17~'19.04>,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외이사 <'16~'18>, DGB 자산운용㈜ 사외이사<'14~'15>, 키움증권㈜ 사외이사 <'12~'15> 등.

⑧ 사외이사 권태균 ('19.3 월 퇴임)

권태균 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9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약 24 개월의 임기 동안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권태균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15~현재>, 삼성전기 사외이사<'14~현재>,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초빙연구위원<'13~'14>,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10~'13>, 조달청장<'09~'10>,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08~'09>, 재정경제부<'05~'08> 등.

⑨ 사외이사 박찬수 ('19.3 월 퇴임)

박찬수 이사는 2018년 3월 27일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9년 3월 27일 사임하였습니다. 약 12 개월의 임기 동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찬수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스톤 대표<'13~현재>, 대신증권 사외이사<'13~'18>,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 위원 <'09~'12>, 금융감독원<'99~'09> 등.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황건호	사외	사외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07~현재>,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16~'1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12~'14>, 한국금융투자 협회 회장<'09~'12>, 한 국증권업협회 회장 <'04~'09>,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사 장)<'99~'03>, 대우증권 ㈜ 부사장<'96~'99>	16.3.25	20.3.25	46 개월	보수위 위험위 감사위
최현만	상임	수석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6~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	16.11.4	20.3.25	38 개월	_

			상무이사(비상근)<'15~현 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비상 무이사(비상근)<'07~현재 >, 미래에셋생명㈜ 대표이 사 수석부회장<'12~'16>,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99~'12>, 미래에셋자산 운용 대표이사<'97~'99>				
조웅기	상임	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17~현재>, 미래 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10~'16>, 하나은행 <'98~'99>, 보람은행 <'91~'98>	17.3.24	20.3.25	34 개월	위험위
김상태	상임	사장	미래에셋대우㈜ IB 부문 총괄<'18~현재>, IB 사업 부문 대표<'14~'18>, 유 진투자증권기업금융총괄 상무<'10~'13>, 메리츠종 합금융 IB 사업본부장 <'07~'10>, 대우증권 <'89~'07>	18.3.27	20.3.25	22 개월	임추위
김병일	사외	사외이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07~현재>, 현 대커머셜(주) 사외이사 <'15~'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4~'15>,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08~'09>, ㈜대현 상임 감사<'99~'07>, 재정경제 원 서기관<'95~'99>	16.2.5	20.3.25	47 개월	감사위 보수위 임추위
정용선	사외	사외이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19~현재〉, 한국리츠협 회 고문(비상근)<'19~현 재〉,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17~'19〉, 코람코자 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13~'19〉, 삼상자산운용 ㈜ 사외이사<'10~'13〉, 법무법인 화우 고문 <'08~'13〉, 금융감독원	19.5.8	20.3.25	8 개월	감사위 임추위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06~'08>				
조성일	존성일 사외 사외이사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17~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99~현 재〉, 멀티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17~'19.04〉,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외 이사<'16~'18〉, DGB 자산 운용㈜ 사외이사 <'14~'15〉, 키움증권㈜ 사외이사<'12~'15〉	19.5.8	20.3.25	8 개월	위험위 보수위 임추위
권태균 (퇴임) 사외		_	법무법인 율촌 고문<'15~현재>, 삼성전기 사외이사<'14~현재>,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3~'14>, 주 아랍에미 리트(UAE) 대사 <'10~'13>, 조달청장 <'09~'10>,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08~'09>, 재정경제부<'05~'08>	17.3.24	19.3.27 (사임일)	24 개월	_
박찬수 (퇴임)	사외	_	파인스톤 대표<'13~현재 >, 대신증권 사외이사 <'13~'18>,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09~'12>, 금융감독원<'99~'09>	18.3.27	19.3.27 (사임일)	12 개월	-

[※] 재임기간은 2019년 12월 기준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9년에는 총 20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전년 도(참석률 100%)와 동일하게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통해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진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 년 중에 개최된 이사회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은 특이사항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51기 제1차 이사회 : 2019년 1월 17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런던법인 감자 및 홍콩법인 증 자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4. 보고 안건								
	가.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변경 보고								
	나. 2018년 감사결과 보고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 산투자신탁 1 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제 1 항(동시행령 제 17 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나) 제 51 기 제 2 차 이사회 : 2019 년 1 월 31 일(오후 2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월 3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보수규 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성과보수 지급 기준(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51 기 제 3 차 이사회 : 2019 년 1 월 31 일(오후 3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월 31일]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장기성과보수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案)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4. 보고 안건								
	가. 2018년 단기성과보수 지급 보고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라) 제51기 제4차 이사회 : 2019년 2월 27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2019년 2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가결								
나. 후순위사채 발행(案)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⁶⁾	찬성	가결								
자.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선임 (案)	찬성	가결								
차. 내부통제기준 개정(案)	찬성	가결								
승인(案) ¹⁾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⁶⁾ 자.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 안건

- 가. 2018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 나. 2018년 재산상이익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 다. 2018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내역 보고
- 라. 제5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마. 제50기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주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19-1호"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Thameslink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폴란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2018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 호,1-3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6)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1-3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마) 제51기 제5차 이사회 : 2019년 3월 27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3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기본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사내이사 처우(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외화채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기 투자중인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 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6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 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2018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 탁"의 투자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바) 제51기 제6차 이사회 : 2019년 3월 27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19년 3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기준일 지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51기 제7차 이사회 : 2019년 4월 11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4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화채권 발행한도 증액(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나.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 분기 보고									
	다. 그룹위험관리 현황 점검 및 계획	 김 보고								
					_			_		

1) 2019년 4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4호"의 총액인수 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 계획 보고

아) 제51기 제8차 이사회 : 2019년 5월 8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5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가결						
	나. 기본규정 개정(案)	찬성	가결						
	다. 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案)	찬성	가결						
	라. 홍콩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가결						

^{※ 2019} 년 3월 27일 권태균, 박찬수 사외이사 퇴임.

2019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신규 선임

자) 제51기 제9차 이사회: 2019년 5월 23일(오후 1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5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승인 (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화채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7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호"의 환혯지 정산대금용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차) 제51기 제10차 이사회 : 2019년 6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6월 26일]

	항목			이시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나.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보고('19년 1Q)									
	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사항 보	 고('19년	2Q)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주간계약 체결 관련 금융자문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라. 그룹 이해상충 방지체계 점검 및 강화방안 보고

2) 기 투자중인 "DE Energia SpA 선순위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칠레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카) 제51기 제11차 이사회 : 2019년 7월 24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9년 7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네이버페이 분할설립회사 출자 계획(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제 51 기 제 12 차 이사회 : 2019 년 7 월 25 일(오전 10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7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연수 및 숙박시설 지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 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파) 제51기 제13차 이사회 : 2019년 8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8월 26일]

항목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						
3. 의결 안건								
가.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승인 및 공정 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案) ¹⁾	찬성	가결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 자신탁15호의 (子)펀드"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 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하) 제51기 제14차 이사회 : 2019년 9월 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9월 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승인 및 공정 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9}년 13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의 (子)펀드"의 투자금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갸) 제51기 제15차 이사회 : 2019년 9월 2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9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나.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보고('19년 2Q)

다. 금감원의 『금융그룹 전이위험 모의평가 결과』보고

냐) 제51기 제16차 이사회: 2019년 10월 24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10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대	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2. 참석여부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	
3. 의결 안건										
가. 그룹	위험관리규정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 승인(\$	병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19-2호"에 유 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다) 제51기 제17차 이사회: 2019년 11월 19일(오전 8시)

[안건통지일: 2019년 11월 18일]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2020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금액 승인 및 일괄신고 서의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위험관 리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CNTR Box전문투자형사모투 자신탁1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 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CEPSA 선순위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7호"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 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제7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기 투자중인 "Nestle Skin Health 선순위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8호"에 매도하고자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제8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랴) 제51기 제18차 이사회 : 2019년 11월 19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1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1기 제19차 이사회: 2019년 12월 13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12월 12일]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
3.	의결 안건								
	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전 환우선주 투자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나. 2019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다.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 1) 2017년 2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 거래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 자동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당사가 자산관리인으로 있는 유동화 SPC인 "엠디드래곤제이차㈜"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를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 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 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 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2019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멀티에셋 CNTR Bo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사전 승인함.

뱌) 제51기 제20차 이사회 : 2019년 12월 26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2월 24일]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	
3.	3. 의결 안건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8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티	배평가 결	과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19년 30))								
	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 보고('19년 3Q)									
	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19년 9월)									
	마. 그룹공동투자 모니터링('19년 3Q)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당사의 투자확약서(LOC)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본 평가는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사회역할, 구성 및 이사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정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결의사항 제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지난 2019 사업연도 동안 총 20 차례 개최되었고, 모든이사가 100%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이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언 및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고, 안 건에 대한 자료 설명이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되 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이사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일전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항목은 기본역할(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점검은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2017 년 제 3 차 이사회(2017.03.24)에서 황건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최초 선임하였고, 황건호 사외이사는 2019 년 제 5 차 이사회(2019.03.27)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의거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실치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4 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1)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2) 금융회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추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3)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고, 상시적으로 후보군을 탐색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19 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총 2 회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 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2019 년 5월 제 8차 이사회 에서 기존 황건호 사외이사에서 정용선 사외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12.31. 기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위후보추처위위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1)}	임기만료일
박찬수	(前)사외	(前)위원장	'18.03.27	'19.03.27
권태균	(前)사외	(前)위원	'17.03.24	'19.03.27
황건호	사외	(前)위원장	'19.03.27	'19.05.08
정용선	사외	위원장	'19.05.08	'20.03.25
김병일	사외	위원	'19.03.27	'20.03.25
조성일	사외	위원	'19.05.08	'20.03.25
김상태	상임	위원	'18.03.27	'20.03.25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통해 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법률상 요구하는 요건 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추가하여 임원 후보 추천시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 2) 제 51 기 제 6 차 이사회(2019.03.27) 및 제 8 차 이사회(2019.05.08)에서 위원 변경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본 규범에서 이사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 ②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수 있어야 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비상임이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 군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의 재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원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또한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후보 추천 내역 전반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사규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간 금융·경영·법률·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인력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후보군은 관련 법령 및 당사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검증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충분한 시간의 검증기간을 통해 최종 의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 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 회 개최되었으며, 의결안건 5 개 모두 가결되어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각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의결되었습니다.

2019 년 기준 사외이사·감사위원·대표이사 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51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년 2 월 27 일(오후 2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19년 2월 26일]

	항목	0	사별 활동내	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찬수	권태균	김상태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²⁾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가결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중 박찬수, 권태균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미실시함.
- 2)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박찬수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나) 제 51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년 4 월 11 일(오전 9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19년 4월 10일]

	항목	0	사별 활동내	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김상태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 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최현만

(2) 출생연도 : 1961 년

(3) 출신학교: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경력

'89 년~'97 년 동원증권 지점장

'97 년~'99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99 년~'12 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12 년~'16 년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07 ~ (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5~(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6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박찬수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찬수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최현만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후보자 최현만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30 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주요 금융계열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2019년 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 찬수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 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 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 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한다.

- 평가

최현만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

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3 월 선임된 최현만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 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 년 2월 27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현만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조웅기

(2) 출생연도 : 1964 년

(3) 출신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 경력

'91 년~'98 년 보람은행

'98 년~'99 년 하나은행

'01 년~'02 년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업본부 부장

'02 년~'05 년 미래에셋증권 CW 본부장

'05 년~'06 년 미래에셋증권 IB 본부장

'06 년~'09 년 미래에셋증권 법인 CM 사업부 대표

'09 년~'10 년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사업부 사장

'10 년~'16 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17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박찬수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찬수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조웅기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후보자 조웅기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조웅기 후보자는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2017 년 3 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2019년 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찬수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 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 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 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한다.

- 평가

조웅기 후보자는 다년간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3 월 선임된 조웅기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 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 년 2월 27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웅기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김병일

(2) 출생연도 : 1955

(3) 출신학교: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4) 경력

'84 년~'87 년 총무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87 년~'94 년 재무부 행정사무관

'95년~'99년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99 년~'07 년 ㈜대현 상임감사

'14 년~'15 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5 년~'18 년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07 년~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16 년~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박찬수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김병일 사외이사는 2016 년 2 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후보자 김병일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며, 15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재무, 회계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2016년 2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임기 동안 감사위원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투명한 감사업무를 지속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2019 년 2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재선임 추천 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1987 년부터 1999 년까지 재무부, 재정경제원 및 재정경제부 에서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87 ~ '99 :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 경제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며, 15 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재무, 회계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재무, 회계 분야에서 당사

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3 월 감사위원 재선임시 선임된 김병일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 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병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9년 2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 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황건호

(2) 출생연도: 1951년

(3) 출신학교 :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Rutgers 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

(4) 경력

'76 년~'99 년 대우증권 부사장

'99 년~'03 년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

'04 년~'09 년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 년~'12 년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회장

'12년~'14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15 년~'19 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07 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16 년~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박찬수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2016 년 3 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후보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9년 2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3 월 감사위원 재선임시 선임된 황건호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황건호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9년 2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3]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박찬수

(2) 출생연도: 1955년

(3) 출신학교: 광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4) 경력

'82 년~'99 년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99년~'09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조사 1국 국장/부원장보

'09 년~'12 년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13 년~'18 년 대신증권 사외이사

'18 년~'19 년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3년~현재 파인스톤 대표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권태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 위험관리위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권태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 및 위험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2018 년 3 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권태균 사외이사와 후보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9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1982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업 전문가이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금융감독원 '82년 ~ '09년)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9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3 월 감사위원 선임 시 선임된 박찬수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 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찬수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9 년 2월 제 1 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 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 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 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 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2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후보자 4]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정용선

(2) 출생연도: 1954년

(3) 출신학교: 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국제전문가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 경력

'06 년~'08 년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08 년~'13 년 법무법인 화우 고문

'10 년~'13 년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13 년~'19.03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17 년~'19.03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19.03~'현재 한국리츠협회 고문(비상근)

'19.03~'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19.05~'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황건호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이사회 의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후보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업 전문가이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82년 ~ '08년 금융감독원)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또한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5 월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된 정용선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용선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9년 4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 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제 51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 명	출생 연도	출신학교	주요 경력	사외이사 경력 (2018년 이 사회 및 위 원회 참석 률)
황건호	1951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Rutgers 대학원 경 제학 석사 연세대 최고경영자과 정 수료 KAIST 최고정보경 영자과정 수료	'76~'99 대우증권 부사장 '99~'03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04~'09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12 한국금융투자협회장 '12~'14 서울대 경영학 초빙교수 '16~'19 서강대 경영학 초빙교수 '07~현재 이화여대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6. 3 ~ (이사회 17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27 회 중 96% 참석)
김병일	1955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 법 학정치학과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84~'87 총무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87~'94 재무부 행정사무관 '95~'99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99~'07 ㈜대현 상임감사 '14~'1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위원 '15~'18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07~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6. 2 ~ (이사회 17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15 회 중 100% 참석)
권태균	1955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버지니아대학 경영학 MBA 중앙대학교 국제대학 원 국제학 박사	'05~'0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경제자유 구역기획단장 '08~'09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09~'10 조달청장 '10~'13 주아랍에미리트(UAE)대사 '17~'19.3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4~현재 삼성전기(주) 사외이사 '15~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	'17. 3 ~ (이사회 17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17 회 중 100% 참석)
박찬수	1955	광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경제학 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원 재무론 석사	'82~'99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99~'09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 조사 1 국 국장, 부원장보 '09~'12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13~'18 대신증권 사외이사 '18~'19.3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3~현재 파인스톤 대표	'18. 3 ~ (이사회 12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8 회 중 100% 참석)

[제 51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 명	출생 연도	출신학교	주요 경력	사외이사 경력 (2018년 이 사회 및 위 원회 참석 률)
정용선	1954	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미시간주립대 대 학원 국제전문가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원 최고경영자과정	'06 년~'08 년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08 년~'13 년 법무법인 화우 고문 '10 년~'13 년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13 년~'19.03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17 년~'19.03 제 4 대 한국리츠협회회장 '19.03~현재 한국리츠협회 고문(비상근) '19.03~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19.5 ~ (신규 선임)
조성일	1954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경제대학원 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12 년~'15 년 키움증권㈜ 사외이사 '14 년~'15 년 DGB 자산운용㈜ 사외 이사 '16 년~'18 년 이베스트투자증권㈜사 외이사 '17 년~'19.04 멀티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99 년~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 년~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19.05~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9.5 ~ (신규 선임)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수 사외이사가 후보제안 하였으며, 박찬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권태균 사외이사가 후보제안하였습니다.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당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황건호 사외이사가 후보제안 하였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입니다.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2019 년 2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9 년 4월 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하였으며, 상기 후보자들 중 재선임후보자인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후보제안자와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박찬수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 황건호 사외이사는 각각후보제안한 사외이사와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황건호 후보자]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CEO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그 동안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8 년 이사회 100% 참석, 위원회 96%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9 년 2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김병일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며, 15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재무, 회계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8 년 이사회 100% 참석,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9 년 2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권태균 후보자]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한 금융업 전문가이며, 조달청장 및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경력이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후보자의 유관기관에서의 행정경력 및 금융, Global 업무감각은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8년 이사회 및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 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박찬수 후보자]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 근감사위원을 역임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 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8년 이사회 및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9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 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정용선 후보자]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금융, 감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9년 4월 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성일 후보자]

후보자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 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통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9년 4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당사는 금융·경영·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 인력 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2019 년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4 명의 기존 사외이사가 추천되었고,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 명의 신규 사외이사가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제 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양한 분야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건호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 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투자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김병일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며, 15 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권태균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한 금융업 전문가이며, 조달청장 및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경력이 있는 행정 전문 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박찬수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회, 사외이사를 역임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용선 후보자는 26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리츠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성일 후보자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 직무공정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을 자격요건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 건 및 동법 제 10 조 임원의 겸직제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당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 하고 당사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 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 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자격요 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5 년간의 징계내역을 확인하여 증빙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 족하여 윤리성·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라) 충실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 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 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충실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본인 소명

당사는 '19 년 2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 년 4 월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징계내역 및 재직증빙 서류,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및 정용선, 조성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신규선임을 위해 '19년 2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년 4월 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상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9 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 명이며, 이 중 4 명의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지배구조법"에 의거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 사규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며, 사외이사 재직 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참석률(75%이상 여부) 등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의 충실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재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시 반영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직전사업연도 이사회 등 출석률	평가 여부
황건호	2 년 10 개월	0	98%	실시
김병일	2 년 11 개월	0	100%	실시
권태균	1 년 10 개월	0	100%	실시
박찬수	10 개월	0	100%	실시

[※] 재임기간은 2018 년말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내부규범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을 추가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자 하며, 그 후보군에 대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주및 임원 등 내외부의 경로를 통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1) 제51기 제1차 이사회 : 2019년 1월 17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2019년 1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
가.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런던법인 감자 및 홍콩법인 증 자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변경 보고

나. 2018년 감사결과 보고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 산투자신탁 1 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제 1 항(동시행령 제 17 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2) 제 51 기 제 2 차 이사회 : 2019 년 1 월 31 일(오후 2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월 3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보수규 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성과보수 지급 기준(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제 51 기 제 3 차 이사회 : 2019 년 1 월 31 일(오후 3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월 3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 안건					
	가. 장기성과보수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4. 보고 안건					
	가. 2018년 단기성과보수 지급 보고					

¹⁾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제51기 제4차 이사회 : 2019년 2월 27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9년 2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후순위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⁶⁾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내부통제기준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11 = 61 = 1					

4. 보고 안건

- 가. 2018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 나. 2018년 재산상이익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 다. 2018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내역 보고
- 라. 제5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마. 제50기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주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19-1호"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Thameslink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폴란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2018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 호,1-3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6)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1-3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5) 제51기 제5차 이사회 : 2019년 3월 27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3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기본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사내이사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외화채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기 투자중인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6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 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2018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 탁"의 투자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6) 제51기 제6차 이사회 : 2019년 3월 27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19년 3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기준일 지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 제51기 제7차 이사회 : 2019년 4월 11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4월 10일]

	항목		이사별 :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화채권 발행한도 증액(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나.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 분기 보고					
	다. 그룹위험관리 현황 점검 및 계획	보고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 계획 보	L고				

1) 2019년 4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4호"의 총액인수 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8) 제51기 제8차 이사회 : 2019년 5월 8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5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기본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홍콩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19}년 3월 27일 권태균, 박찬수 사외이사 퇴임.

²⁰¹⁹ 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신규 선임

(9) 제51기 제9차 이사회 : 2019년 5월 23일(오후 1시 30분)

[안건통지일: 2019년 5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승인 (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화채권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7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호"의 환혯지 정산대금용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0) 제51기 제10차 이사회 : 2019년 6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6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 안건					
	가. 재산상 이익제공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나.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보고('19년	년 1Q)				
	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사항 보고('19년 2Q)					
	라. 그룹 이해상충 방지체계 점검 및	· 강화방안 보	고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주간계약 체결 관련 금융자문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DE Energia SpA 선순위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칠레태양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1) 제51기 제11차 이사회 : 2019년 7월 24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9년 7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네이버페이 분할설립회사 출자 계획(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2) 제 51 기 제 12 차 이사회 : 2019 년 7월 25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19년 7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연수 및 숙박시설 지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 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3) 제51기 제13차 이사회 : 2019년 8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8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승인 및 공정 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¹⁾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 자신탁15호의 (子)펀드"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 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4) 제51기 제14차 이사회 : 2019년 9월 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9월 5일]

ōo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	¦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	석		참석	_
3. 의결 안건	3. 의결 안건							
Portfolio -	Hotels & Resorts 투자 승인 및 공정 내규모내부거래 정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9}년 13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의 (子)펀드"의 투자금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5) 제51기 제15차 이사회 : 2019년 9월 2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19년 9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나.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보고('19년 2Q)

다. 금감원의 『금융그룹 전이위험 모의평가 결과』보고

(16) 제51기 제16차 이사회 : 2019년 10월 24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9년 10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3. 의결 안건					
	가. 그룹위험관리규정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19-2호"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7) 제51기 제17차 이사회 : 2019년 11월 19일(오전 8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1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2020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금액 승인 및 일괄신고 서의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위험관 리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CNTR Box전문투자형사모투 자신탁1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 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CEPSA 선순위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7호"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 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제7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기 투자중인 "Nestle Skin Health 선순위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8호"에 매도하고자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 자형 사모투자신탁제8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8) 제51기 제18차 이사회 : 2019년 11월 19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1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 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9) 제51기 제19차 이사회 : 2019년 12월 13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9년 12월 12일]

기 개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전 환우선주 투자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나. 2019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다.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 1) 2017년 2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 거래금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 자동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당사가 자산관리인으로 있는 유동화 SPC인 "엠디드래곤제이차㈜"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를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 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 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 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2019년 17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멀티에셋 CNTR Bo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사전 승인함.

(20) 제51기 제20차 이사회 : 2019년 12월 26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9년 1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_	
2.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3. 의결 안건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8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19년 3G))					
	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현황 보고('19년 3Q)						
	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19년 9월)						
	마. 그룹공동투자 모니터링('19년 3	Q)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당사의 투자확약서(LOC)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51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년 2 월 27 일(오후 2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19년 2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박찬수	권태균	김상태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²⁾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가결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중 박찬수, 권태균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2)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박찬수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제 51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 년 4 월 11 일(오전 9 시 30 분)

[안건통지일: 2019년 4월 10일]

	항목	0	사별 활동내	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김상태	_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제 51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19.1.17(목)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2019.1.16]

항목	위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18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 보고안건
 - 2018년 감사결과 보고
 - 2018년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세칙 개정의 건(안)
 - 제50기 외부감시인 핵심감사사항 수정보고

- 제 51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19.2.27(수) 오후 1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2.26]

항목		별 활동나]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4.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FY2018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 심의안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案)
- 2)보고안건
- 제50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제5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세칙 개정의 건 보고(안)
- 외부감사인 선임 및 관리지침 제정의 건 보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제정의 건 보고(안)

- 제 51 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2019. 3. 27 (수) 오전 10 시 개최 [안건 통지일: 2019. 3. 26]

항목	위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_1)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김병일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의결권 행사 불가

- 제 51 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19. 4. 11 (목) 오전 9 시 5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4. 10]

항목	위·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19. 5. 8 (수) 오후 6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5. 7]

항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박찬수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임시주주총회(2019.5.8)에서 정용선 사외이 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보고안건
 - 제51기 외부감사인 표준감사시간 보고

- 제 51 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19. 6. 27 (목) 오전 11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6.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보고안건
 - 해외 현지법인 내부통제 현황 보고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보조조직 업무추진 현황 및 하반기 일정보고

- 제51기 제7차 감사위원회 : 2019. 7. 25 (목) 오전10시30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7.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보고

- 제 51 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19. 8. 27 (화)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8. 26]

항목		원별 활동나	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19. 9. 26 (목) 오전 8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9. 25]

항목	위·	원별 활동나	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세칙 개정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개정(안) 보고
 -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및 중요성 기준 등 보고

- 제 51 기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19. 10. 24 (목) 오전 9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0. 23]

항목	위·	원별 활동나	1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및 향후 일정 보고
 - 제 51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진행현황 보고

- 제 51 기 제 11 차 감사위원회 : 2019. 11. 19 (화)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1.18]

항목	위·	원별 활동나]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12 차 감사위원회 : 2019. 12. 13 (금)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2. 12]

	항목		원별 활동니	귀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19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19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 제 51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1.17 오후 14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1.16]

항목	위원별 :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3K TEU 컨테이너선 12 척 신조 선 박금융 LOC 제출의 건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2019 년 1 분기 위험액(VaR)한도 설 정(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마. 5 호안건 ⁶⁾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바. 6 호안건 ⁷⁾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 1)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등 총 2건 보고
- 2) 23K TEU 컨테이너선 12 척 신조 선박금융 LOC 제출의 건
- 3)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 년 1 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5)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6)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7)전사 자금사용 규모 증가에 따른 단기차입금 한도 증액 요청

- 제 51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4.04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9.04.0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	-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9 년 2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Tour Majunga 오피스 Equity 인수의 건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등 총 2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년 2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3)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Tour Majunga 오피스 Equity 인수의 건

- 제 51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5.23 오후 14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9.05.21]

항목	위원별 :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위험관리규정 개정으로[금융상품소위원회] 역할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대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기준 및 등급 결정의 권한 위임

- 제 51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8.27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8.26]

	항목	위원별 :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	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	건에 대한 의견	_	_	_
4. 의결안	건			
Strate	호안건 ¹⁾ egic Hotels & Resorts blio 인수 및 투자(案)	찬성	찬성	가결
	호안건 ²⁾ 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인수 및 투자에 대한 승인 요청
- 2) 고유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신규 선임

- 제 51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9.06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9.05]

항목	위원별 :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조건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제 51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인수 및 투자(案)'의 투자 조건(Equity 추가투자 및 인수물량 변경 등)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제 51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9.26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9.24]

항목	위원별 :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9 년 4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 1)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등 총 3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년 4분기 위험액 한도 배분

- 제 51 기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0.24 오전 8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10.23]

항목	위원별 :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선순위 인수금융 및 상환우선 주 총액인수 입찰용 LOC 제출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 1)동일거래상대방 신용한도 변경 보고 등 총 2건 보고
- 2) 제 35 차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입찰용 상환우선주 총액 인수 확약의 건과, 제 37 차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선순위 인수금융 입찰용 LOC 제출의 건이 총액 입찰용 상환우선주 총액 인수 확약의 건이 동일 기초자산에 해당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
- 3)전사 자금사용 규모 증가에 따른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 요청

- 제 51 기 제 8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1.06 오후 5 시

[안건 통지일: 2019.11.05]

항목	위원별 :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아시아나항공㈜ 지분 공동 투자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매각 거래 참여를 위해 HDC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본입찰에 참여하는 건

- 제 51 기 제 9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2.13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9.12.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CPS투자(案)	찬성	찬성	가결

- 1) 위기상황 분석 결과 1건 보고
- 2)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CPS 투자의 건

마) 보수위원회

제 51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9 년 1 월 31 일 (오후 2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년 1월 31일]

항목	위원별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	_				
4. 의결안건						
가. 2018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 및 장기 성과보수 지급대상자 추천(案)	찬성	찬성	가결			

제 51 기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19 년 2 월 27 일 (오후 2 시 45 분)

[안건 통지일: 2019년 2월 26일]

항목	위원별 :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가결	

제 51 기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19 년 5 월 8 일 (오후 5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년 5월 7일]

항목	9	위원별 활동내역				
1. 위원 성명	황건호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i	_				
4. 의결안건						
가. 2019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황건호

황건호 사외이사는 '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20회 중 20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1회, 보수위원회 3회, 위험관리위원회 9회, 감사위원회 12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황건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등을 위해 '19년 중 총 9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김병일

김병일 사외이사는 '19 년 중 개최된 이사회 20 회 중 20 회, 임원후보추천위 원회 1 회, 보수위원회 3 회, 감사위원회 12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일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9년 중 총 7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권태균

권태균 사외이사는 '19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위험관리위원회 2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9년 중 총 2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찬수

박찬수 사외이사는 '19 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7 회 중 7 회,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1 회, 감사위원회 4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9년 중 총 2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정용선

정용선 사외이사는 '19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감사위원회 8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9년 중 총 4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조성일

조성일 사외이사는 '19 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3 회 중 13 회, 위험관리 위원회 7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9년 중 총 4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요약

구분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C	이사회			감사 위원회			H험관i 위원회			보수 위원회			후보추 위원회	∸천	시간
사외 이사명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실적
황건호	20	20	20	12	12	12	9	9	9	3	3	3	1	1	1	90
김병일	20	20	20	12	12	12				3	3	3	1	1	1	72
권태균	7	7	7				2	2	2				1	1	1	20
박찬수	7	7	7	4	4	4							1	1	1	24
정용선	13	13	13	8	8	8										42
조성일	13	13	13				7	7	7							40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피보험자: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500억 (건당, 연간)
 □ 보험료: 190,0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없음
 □ 가입기간: 2018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29일

□ 피보험자 :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 500억 (건당, 연간)

□ 보험료: 169,1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없음

□ 가입기간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2월 29일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의 '제 4 절 임원 및 그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로 내규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9 년 사외이사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교육일시	교육주체	참석 사외이사	교육내용
2019년 1월 4일	내부교육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2019 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황건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 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_	_
가. 전문성	충족	금융분야 전문성을 갖춤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라. 충실성	충족	0 " — C 0 TE TCD

2) 사외이사 김병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병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병일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 성 자격요건 및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_	_
가. 전문성	충족	재무·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춤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라. 충실성	충족	

3) 사외이사 정용선

가) 소극적 자격요건

정용선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정용선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 성 자격요건 및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_	-
가. 전문성	충족	재무, 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춤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라. 충실성	충족	0 11 32 2 0 1 2 1 2 1

4) 사외이사 조성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조성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조성일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 성 자격요건 및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_	-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성을 갖춤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라. 충실성	충족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 서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평가에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13조 및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과 재선임 결정 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되, 평가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이사회에서는 금년 중에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매년 초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과 선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0년 1월에 실시한 2019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 생대우는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 등의 내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 회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에 의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참여도 평가(40%), 자기 평가(40%), 사외이사 간 평가(20%)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의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기본역할(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

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자기 평가 및 사외이사 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작성한 평가서를 통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20년 1월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4 명의 사외이사 모두 임기 중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100%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모든 사외이사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평가결과								
사외	충실성	기본		활동평가					
이사	(참석률)	역할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 · 책임성	공정성	기타	방안	
황건호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1	_	
김병일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_	_	
정용선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1	_	
조성일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_	_	

3) 외부평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외부평가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가) 외부평가 개요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 검토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미래에셋대우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 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 내역

-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인원 구성: 담당임원 2명, 팀장 1명, 팀원 13명

· 담당업무

: 이사회 및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구비 및 관리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검증 등 관리업무 지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등 제반 실무지원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및 사외이사 연수 실시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황건호

가) 재직기간 : 2019. 1. 1 ~ 2019. 12. 31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그	보수총액	71,20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60,000,000	월 500 만원	
	상여금	_		
	기타 수당	11,210,8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건강검진비(배우자)141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452,300	건강검진비(본인) 145 만원	
	업무활동비	_	_	
	건강검진 지원	1,452,300	건강검진비(본인) 145 만원	
	차량제공	_	_	
	사무실제공	_	_	
	기타 편익제공	_	-	

2) 사외이사 김병일

가) 재직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7,30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_
기타 수당	9,30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_	_
업무활동비	_	_
건강검진 지원	_	_
차량제공	_	_
사무실제공	_	_
기타 편익제공	_	_

3) 사외이사 정용선

가) 재직기간 : 2019. 5. 8 ~ 2019. 12. 31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1	보수총액	36,85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31,2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_	_	
	기타 수당	5,65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1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4) 사외이사 조성일

가) 재직기간 : 2019. 5. 8 ~ 2019.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7,35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31,2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6,15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 사외이사 권태균

가) 재직기간 : 2019. 1. 1 ~ 2019. 3. 27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472,65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1,6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_	_
기타 수당		3,872,65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기타과세소득 17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	타 편익	_	_
업무활동비		_	_
건강검진	지원	-	_
차량제공		-	_
사무실제공		-	_
기타 편익	제공	_	_

6) 사외이사 박찬수

가) 재직기간 : 2019. 1. 1 ~ 2019. 3. 27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972,65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1,6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_	_
기타 수당	4,372,65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기타과세소득 17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_	_
업무활동비	_	_
건강검진 지원	_	_
차량제공	_	_
사무실제공	_	_
기타 편익제공	_	_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신호주	'13.6.21. ('15.3.27 . 연임)	제46기 정기 주충일	기신 21 개월	보상위원회 ('13.6 월~'15.3 월) 사외이시후보추천위원회 ('13.6 월~'14.3 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3.6 월~'15.3 월) 운영위원회 ('14.3 월~'16.3 월)	리스크관리위원장 ('13.6 월~'15.3 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 ('15.3 월~'16.3 월)	(現)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삼일 PwC 컨설팅 고문 코스닥증권시장 대표이사 한국증권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산업은행 감사 재정경제부(現기획재정부) 국장
변환철	'15.3.27	제49기 정기 주총일 ('16.03. 중도퇴임)	13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5.3 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 ('15.3 월~현재) 감사위원회 ('15.3 월~현재) 운영위원회 ('16.3 월~'16.11 월)	감사위원장 ('15.3 월~'16.3 월)	(現)법무법인 이보 대표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대한주택보증 비상임이사(이사회의 장)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안동현	'15.3.27	제48기 정기 주총일 ('15.10.3 0 중도퇴 임)	8 개월	보상위원회 ('15.3 월~'15.10 월) 감시위원회 ('15.3 월~'15.10 월)	보상위원장 ('15.3 월~'15.10 월)	(現)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포스코사와이사 NH 농협은행 사와이사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RBS Head of Quant Strateg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 부교 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조교수
홍성일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6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 월~'17.0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 월~'18.03 월) 감사위원회 ('17.03 월~'18.03 월) 보수위원회 ('16.12 월~17.03 월)	위험관리위원장 ('17.03 월~'18.03 월)	(現父氏 파트너스 부회장(비상근) 대우증권 시외이사 IBK 증권 사외이 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신 공항고속도로 대표이사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
정윤택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7.03.2 3 중도퇴 임)	3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 월~'17.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 월~'17.3 월)	-	동성 코퍼레이션㈜ 사외이사 재단법인 정이있는 장학재단 이사장 ㈜효성 재무본부장(사장) 효성캐피탈㈜ 대표이사 효성그룹 파이낸스 사장
권태균	'17.03.24	제51기 정기 주총일 ('19.3.27 중도퇴임)	25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17.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7.0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7.03 월~'18.03 월) 위험관리위원장 ('18.03 월~현재)	現)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삼성전기㈜ 사외이사 주 이랍에미리트(UAE) 대사 조달청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금융
						정보분석원장/경제자유구역기획
						단장
		제51기				現) 파인스톤 대표
		정기		감시위원회		대신증권 사외이사
박찬수	'18.03.27	주총일	13	('18.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19.3.27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03 월~현재)	('18.03 월~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도퇴임)				금융감독원 조사 1 국 국장

रने पने	최초	임기	재임	담당	عا (ما	경력	
성명	선임일	만료일	기간	위원회	직위	경역 	
김병일	'16.2.5.	제51기 정기 주총일	47 개월	감시위원회 ('16.2 월~현재) 보수위원회 ('16.2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2 월~'17.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3 월~'16.12 월)	보수위원장 ('16.2 월~'17.3 월) 감사위원장 ('17.3 월~현재)	現)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 공교수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주대현 상임감사 재무부/재정경제부(원) 행정시무 관 및 서기관	
황건호	'16.3.5	제51기 정기 주총일	46 개월	감시위원회 ('16.5 월~현재) 운영위원회 ('16.3 월~'17.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3 월~'18.3 월) 보수위원회 ('17.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6.3 월~'17.3 월) 보수위원장 ('17.3 월~현재) 이사회의장 ('17.3 월~현재)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사장) 대우증권㈜ 부시장	
정용선	'19.05.08	제51기 정기 주총 일	8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5 월~현재) 감사위원회 ('19.5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9.5 월~현재)	現)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現)한국리츠협회 고문(비상근) 제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삼상자산운용㈜ 사외이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 장보	
조성일	'19.05.08	제51기 19.05.08 정기 주총일		위험관리위원회 ('19.5 월~현재) 보수위원회 ('19.5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5 월~현재)	위험관리위원장 ('19.5 월~현재)	現)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멀티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외이사 DGB 자산운용㈜ 사외이사 키움증권㈜ 사외이사	

[※]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2019년 12월 기준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 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

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동 임원의 요건에 부합함을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자격요건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 조에 정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동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자격요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최고경영자의 중도 사임의 경우와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및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 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에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전 부터, 사임 시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 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 바, 미래에셋대우 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 승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 다. 이후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 단기간 이내에 최종 후보자 중 최고경영자를 선발하되,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 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되고,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2016 년 12 월 30 일 개최한 FY2016 제 20 차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내 등기이사 중에서 직위, 위촉일(현 직위 위촉일을 말함),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이사의 부재시 부문대표 중에서 상기와 동일한 순위로 해당 부문대표가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사고, 건강상 사유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즉, 최고경영자후보자의 선정부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를 통한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법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5 조에도 비 상상황 경영승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2016년 11월 4일 개최한 제 16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고, 조웅기 부회장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한 제 3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웅기 부회장은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제 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와 조웅기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 사 항 목	대표이사		
	ם יו ס ח	최현만	조웅기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		
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		
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		
·검사기관으로부터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제재조		
지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 2 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11-11-11-11	-11-11-11-11
-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		해당사항
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 10 억원) 이상인	.,, _	없음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		
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		
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2016 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고, 동 사규 제 37조에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 부회장과 조웅기 부회장은 2019 년 3 월 27 일 개최한 제 5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 및 조웅기 대표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동 자격요건의 충족을 충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16 년 11 월 4 일 홍성국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동일자에 최현만 現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됨으로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는 2016 년 11 월 4 일 제 48 기 제 3 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현만 사내이사를 선임하였고, 동일자에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제 1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웅기 대표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제 4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년 3월 3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2017년 3월 24일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는 2018 년 3월 27일 제 4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6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18년 3월 27일 제 7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는 2019년 3월 27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27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19년 3월 2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 · 의결 경과

[최현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서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조웅기 대표이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 (舊)미래에셋증권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 년 10 월 25 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8 조와 제 39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내부 후보군은 회사와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 핵심포지션 담당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금융산업 경력 보유자로서 관련 법률 및 사규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아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i) 주주, 사내 추천, 기관투자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 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 ii)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
- iii) 회사 최고경영자 및 외부 자문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예비 후보군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후보군을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위 검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속한 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후보군 현황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9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지배구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3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 사규에 따라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연임 또는 변경 등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게 2019년 3월 27일 제5차 이사회에서 최현만, 조웅기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6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담당부서로 하고. 동 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i)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ii)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iii)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이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인원 구성 : 담당임원 2명, 팀장 1명, 팀원 13명

· 지정사유 : 미래에셋대우 경영관리팀은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고 담

당 인력 및 업무수행 경험 등이 충분함.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3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 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분야 전문가,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및 감독·검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되고, 이사회 및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을 상근 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 소집된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부의안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19 년 2 월에 소집된 2019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이에 재무실장이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FY2018 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를 '19 년 2 월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재무 및 업무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며, 일상 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10)

'17 년 3월에 소집된 2017년 제 2차 감사위원회에서 FY 2017 ~ FY2019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 기말 감사를 마지막으로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은 종료가 되어, FY2020 ~ FY2022 외부감사인은 신규선임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감사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FY2020 ~ FY2022 외부감사인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9 년 11 월 삼일회계법인을 당사의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 하였으며, 2019 년 11 월에 소집된 2019 년 제 11 차 감사위원회에서 FY2020 ~ FY2022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 체결을 의결받아, 2020 년 1 분기부터 2022 년 기말까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외부감사 진행 경과 및 절차상 특이사항 발생 여부,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감독·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 상감사 및 사후공람과 감사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등 감 사보조조직 업무통할에 관한 권한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근감 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한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등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정기위원 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매 연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받고 있으며, 이후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등) 추인,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 감독기관 수검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사항 및 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정리하여 수시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2019 년 중에는 '19 년 1 월에 소집된 감사위원회에서 '2019 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 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447의 3,542의 12)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2019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외 제 9 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핵심감사 사항 및 중요성 기준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검토 및 확인을 하였으며, 2019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9 년 제 2 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후, 동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18)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9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 1회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상법§415 의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상법§542 의 11, 동법 시행령§37 의 2)

또한 상근감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되지 못하며(상법§542의8), 이외에도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될 수 없습니다.(상법 §542의 10)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 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3인 모두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김병일 위원장은 재무부와 재경부에서 1987 년부터 1999 년까지 근무하였으며, 정용선 위원은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근무하였 습니다. 또한 황건호 위원은 대우증권에 입사하여 대우증권 부사장,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2012 년까지 역임하였 습니다.

김병일 위원장은 재무부와 재경부에서 1987 년부터 1999 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며, 정용선 위원 역시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박찬수 감사위원이 중도 사임(2019.03.27)함에 따라 제 51 기 임시주주총회(2019.5.8)에서 정용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임기 만료일
박찬수	(前)사외	(前)위원	'18.03.27.	'19.03.27.
김병일	사외	위원장	'16.02.05.	'20.03.25.
황건호	사외	위원	'16.05.13.	'20.03.25.
정용선	사외	위원	'19.05.08.	'20.03.25.

주)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9년 총 12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참석율은 100%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 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51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19.1.17(목)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2019.1.16]

항목	위	위원별 활동내역 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입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18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 보고안건
- 2018년 감사결과 보고
- 2018년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세칙 개정의 건(안)
- 제50기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수정보고

- 제 51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19.2.27(수) 오후 1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2.26]

항목	위원	별 활동니]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FY2018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심의안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案)
- 2)보고안건
- 제50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제5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세칙 개정의 건 보고(안)
- 외부감사인 선임 및 관리지침 제정의 건 보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제정의 건 보고(안)

- 제 51 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2019. 3. 27 (수) 오전 10 시 개최 [안건 통지일: 2019. 3. 26]

항목	위	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_1)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김병일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불가

- 제 51 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19. 4. 11 (목) 오전 9 시 5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4. 10]

항목	위·	1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19. 5. 8 (수) 오후 6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5. 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박찬수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임시주주총회(2019.5.8)에서 정용선 사외이 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보고안건
 - 제51기 외부감사인 표준감사시간 보고
- 제 51 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19. 6. 27 (목) 오전 11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6.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보고안건
- 해외 현지법인 내부통제 현황 보고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보조조직의 업무추진 현황 및 하반기 일정보고

- 제51기 제7차 감사위원회 : 2019. 7. 25 (목) 오전10시30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7.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보고

- 제 51 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19. 8. 27 (화)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8.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19. 9. 26 (목) 오전 8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9. 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I.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세칙 개정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개정(안) 보고
 -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및 중요성 기준 등 보고

- 제 51 기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19. 10. 24 (목) 오전 9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0.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및 향후 일정 보고
 - 제 51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진행현황 보고

- 제 51 기 제 11 차 감사위원회 : 2019. 11. 19 (화)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1.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1 기 제 12 차 감사위원회 : 2019. 12. 13 (금)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9. 12. 12]

	항목	위·	원별 활동니	귀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19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19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감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 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감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감사보조조직을 둘 수 있으며(감사위원회규정§20),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14)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예하 감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본부장 외 감사1,2팀 30명, 상시컨설팅팀 13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2020년 1월 기준)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하여 종합감사, 부문감사 및 기획테마감사, 상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 수검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설정하고 전사적 위험관리 업무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이사회 이사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별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 사업계획, 운용현황, 대외규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액 규모를 기준으로 회사의 위험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위험한도 설정 시, 회사의 연간 사업계획과 수익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

위험부담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예비한도 확보를 통해 사업계획상 실행가능성이 유동적인 투자/운용 건 및 제도변경 등에 따른 위험액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19년 총 9회의 위험관 리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 및 회사 內 자산운용 부서별 수익목표를 점검 한 후, 회사가 유지하 여야 하는 적정 재무건전성 비율을 고려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 유형별로 회사가 연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과 자산운용부서가 분기 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 등으로 구 분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 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투자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한도와 관련된 규제사항 및 모범규준을 점검하고, 회사의 자기자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총량적 투자한도(신용공여·우발채무·부동산투자)·기업집단별 총 투자한도·동일인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한 단일투자에 대해서 건별로 투자를 승인하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19년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주요한 단일투자 총 6건(조건 변경건 포함시 총 7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적정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사의 투자한도 소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회사內 투자 전담부서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투자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회사의 적정 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이사회는 당사의 기본규정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인 위험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일반규정을 제·개정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정한 세칙 및 지침의 경우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 제·개정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위험관리일반규정의 개정이 1건 있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 관련 외부 규제사항, 모범기준 및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한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위험현황을 점검하고 회사의 종합적 위기관리체계를 관리할 의무 및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 원회는 2019년 중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현황, 회사의 주요 투 자 건에 대한 진행사항, 회사內 위험자산 편입현황, 회사 및 영업부문별 위험 한 도 소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험관리 관련 정책결정 사항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점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외 규제 환경 변화의 방향 및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후,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주요 위험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인(대표이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적정한 수준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위원 선임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1기 제6차 이사회(2019년 3월 27일)에서 위원회 구성의 변화로, 위원장이 김병일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제51기 제8차 이사회(2019년 5월 8일)에서 조성일위원이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019년말 위험관리위원회는 모두 3명의이사(2명의 사외이사, 1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중 재임하였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 만료일
권태균	(前)사외	(前)위원장	'17.03.24	'19.03.27
김병일	사외	(前)위원장	'19.03.27	'19.05.08
조성일	사외	위원장	'19.05.08	'20.03.25
황건호	사외	위원	'18.03.27	'20.03.25
조웅기	상임	위원	'17.03.24	'20.03.25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3)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 제 7 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3 인 이상의 이사로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 인(대표이사 1 인 및 사외이사 2 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성일 위원장은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 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황건호 위원은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주 2) 제 51 기 제 6 차 이사회(2019.03.27) 및 제 8 차 이사회(2019.05.08)에서 위원 변경

조웅기 위원은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폭넓 은 식견을 가진 금융 투자 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도에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9회 소집되었고 위원들의 100% 참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결안건 17건, 보고안건 10건이었습니다.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3회 소집되어 회사의 연간 및 분기별 총 위험액 한도설정, 주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6회 소집되어 회사의 주요 투자 집행 및 한도변경 등에 대한 승인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위험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회사의 위험상황 분석,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등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51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1.17 오후 2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1.16]

항목	Ç	위원별 활동내역	9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3K TEU 컨테이너선 12 척 신조 선박금융 LOC 제출의 건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2019 년 1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 호안건 ⁶⁾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 호안건 ⁷⁾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등 총 2건 보고
- 2) 23K TEU 컨테이너선 12 척 신조 선박금융 LOC 제출의 건
- 3)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 년 1 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4)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5)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6)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7)전사 자금사용 규모 증가에 따른 단기차입금 한도 증액 요청

- 제 51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4.04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9.04.03]

항목	3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	_	-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9 년 2 분기 위험액 (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Tour Majunga 오피스 Equity 인수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등 총 2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년 2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3)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Tour Majunga 오피스 Equity 인수의 건

- 제 51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5.23 오후 2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9.05.21]

항목	<u> </u>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위험관리규정 개정으로 [금융상품소위원회] 역할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대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기준 및 등급 결정의 권한 위임

- 제 51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8.27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9.08.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격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_		
4. 의결안건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인수 및 투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 임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인수 및 투자에 대한 승인 요청
- 2) 고유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신규 선임

- 제 51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9.06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9.05]

항목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_	_	_	_		
4. 의결안건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조건 변경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제 51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인수 및 투자(案)'의 투자 조건(Equity 추가투자 및 인수물량 변경 등)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제 51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09.26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09.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	_		
4. 의결안건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9 년 4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등 총 3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2019년 4분기 위험액 한도 배분

- 제 51 기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0.24 오전 8 시 30 분

[안건 통지일: 2019.10.23]

항목	-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선순위 인수금융 및 상환우선주 총액인수 입찰용 LOC 제출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동일거래상대방 신용한도 변경 보고 등 총 2건 보고
- 2) 제 35 차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입찰용 상환우선주 총액 인수 확약의 건과, 제 37 차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주)LG CNS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선순위 인수금융 입찰용 LOC 제출의 건이 총액 입찰용 상환우선주 총액 인수 확약의 건이 동일 기초자산에 해당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
- 3)전사 자금사용 규모 증가에 따른 단기차입금 한도 변경 요청

- 제 51 기 제 8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1.06 오후 5 시

[안건 통지일: 2019.11.0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_	_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아시아나항공㈜ 지분 공동 투 자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매각 거래 참여를 위해 HDC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본입찰에 참여하는 건

- 제 51 기 제 9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9.12.13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2019.12.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_	_	_	_		
4. 의결안건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CPS 투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위기상황 분석 결과 1건 보고
- 2)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및 CPS 투자의 건

3) 평가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 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위험관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8. 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정관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의거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결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제51기 제8차 이사회에서 책임경영 문화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의 권한을 이사회와 사내 의사결정 기구인 경영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당사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타법인 출자, 인허가업무, 유·무형자산의 취득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심의, 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 별표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제 1 호)

나) 기타 사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당사 운영위원회는 기타 사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운영위원회규정 별표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제 2호)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와 사내 의사결정 기구인 경영위원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나. 구성(운영위원회 위원)

1) 총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규정 제 3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 만료일 ^{주 2)}
최현만	상임	(前)위원장	'16. 11. 04	'19.05.08
조웅기	상임	(前)위원	'18. 03. 24	'19. 05. 08
김상태	상임	(前)위원	'18. 03. 27	'19. 05. 08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19 년에 총 5 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로 운영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주 2) 제 51 기 제 8 차 이사회(2019 년 5 월 8 일)에서 위원회 및 관련 규정 폐지가 결의됨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51 기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 년 1 월 31 일(오후 1 시 30 분)

[안건통지일: 2019년 1월 28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주요직책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51 기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 년 2월 27일(오후 1 시 30분)

[안건통지일: 2019년 2월 24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ATS(대체거래소) 설립 참여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51 기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9 년 3 월 27 일(오전 10 시)

[안건통지일 : 2019년 3월 24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퇴직임원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51 기 제 4 차 운영위원회: 2019 년 4 월 11 일(오전 9 시)

[안건통지일: 2019년 4월 8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이연 성과보수 지급 보류(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 51 기 제 5 차 운영위원회: 2019 년 4 월 26 일(오후 2 시)

[안건통지일: 2019년 4월 23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_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_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주요직책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 운영위원회는 내규에서 정한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의사결정 사항이 절차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절차상 적정성을 감독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을 통하여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9. 사회적책임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정관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의거 사회공헌 및 기업사회책임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회적책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제 51 기 제 6 차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적책임위원회의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 후, 해당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 사회적책임위원회는 기부,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등 기업사회책임 활동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기타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 사회적책임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나. 구성(사회적책임위원회 위원)

1) 총괄

사회적책임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 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1)}	임기 만료일 ^{주 2)}
최현만	상임	(前)위원장	'18. 10. 25	'19. 03. 27
황건호	사외	(前)위원	'18. 10. 25	'19. 03. 27
박찬수	(前)사외	(前)위원	'18. 10. 25	'19. 03. 27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사회적책임위원회의 2019년 개최 이력은 없습니다.

주 2) 제 51 기 제 6 차 이사회(2019 년 3 월 27 일)에서 위원회 및 관련 규정 폐지가 결의됨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